

5.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 3. 17.

개 정 이 유

주차장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902호)되어 로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 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참고시설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 제5조 제11조 삭제 및 령 제12조의2).
- 나.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12조제1항제4호).
- 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임시주차장의 확보의무를 폐지함(령 제12조제2항).
- 라.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 등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참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령 별표 1).

마. 종전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법령상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함(령 별표 1).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를 “제1항제1

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자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중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2”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노외주차장의 규모·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등”을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 지역의 특수성, 우이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숙박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위락시설란중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을 “위락시설”로, “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하며, 동표의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란중 “방

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을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부대운동시설별산정대수+기타 부대시설 전용면적 6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200㎡당 1대

별표 1의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표의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라. 식물관련시설

마. 방송·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4호 본문중 “소숫점이하 두 자리까지”를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며, 동호 단서중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별표 1의 비고 제8호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 한 때	법 제6조제1항	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제2항	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주택회보